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2월 3일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년 10월 7일
나. 제 안 자: 최동철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0년 10월 14일
라. 상정일자: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1. 2. 3.)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동철 의원)

□ 제안이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약칭 위치를 정비함(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
나. 자치구 명칭을 정확히 기재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안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조부서: 주차관리과

라. 입법예고(2020. 10. 8. ~ 10. 12.)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개정취지

○ 주차장특별회계 관리운용에 있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약칭의 위치[1]를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조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안 제1조, 제2조의2)**

- 안 제1조(목적) 중 "(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약칭 삭제
- 안 제2조의2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라는 약칭을 규정

○ **자치구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함(안 제2조)**

- "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개정하여 자치구의 고유한 정식명칭[2]을 사용하도록 함

---

1) 자치법규에서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에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83쪽 참조)

2) 약칭하는 용어가 어떤 행정기관·법인 또는 사물의 고유한 명칭일 경우 근거조문이나 근거가 되는 장·절이 따로 있으면 그 장·절의 제목에서는 그 행정기관·법인 또는 사물의 고유한 정식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384쪽 참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안 제5조, 제7조)**

다. 종합의견

○ 구청장의 책무[3] 조항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제출되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에 신설된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조항에서는 "구청장은 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입법목적을 좀 더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한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3) 시장 등의 책무·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은 그 자치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 등이 수행하여야 할 책무 등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시장 등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자치법규에서 명확히 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다.(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91쪽 참조)

○ 다만, 문맥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2조의2 중 “「주차장법」 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를 “「주차장법」 **에 따른** 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로 자구 정리가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관계 법령 1부

참 고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